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전문 프로그램 내규

2019. 10. 1 개정

제 1 장 공학교육인증제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학교육인증제규정 제9조에 따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의 공학교육 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프로그램)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는 공학교육인증제규정 제1조에 의한 공학교육인증과정으로서 "전문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며 전문프로그램의 이수요건은 공학교육인증 제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본 시행내규 제3장과 같다.
- 제3조(일반프로그램)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모집 단위 내에 "일반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며 일반프로그램의 이수요건은 학칙 및 학사내규에 따른다.
- 제4조(이수신청) 2006학년도 이후 신입생부터는 모든 학생을 "전문프로그램"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입생, 전과생 및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복학생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는 본 내규 제6조와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공학교육인증 이수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함으로써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이수변경)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복수전공신청자, 부전공신청자, 교직과정이수 자 또는 개인사정으로 전문프로그램의 이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거쳐 4학년 1학기 수강신청이 완료되기 이전에 공학교육인증 포기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함으로써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4학년 1학기 수강신청 이후부터는 소속 프로그램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부, 복수, 연계 전공자, 편입생, 전과생, 외국인 유학생, ROTC, 교환학생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로 공학교육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일반프로그램"으로 이수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개정 2016.09.05.><개정 2019.10.01.>

- 제6조(편입생) 편입생은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거쳐 공학교육인증 이수신청서와 이수학점인정신 청서를 편입학 후 6개월 이내에 학과에 제출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프로그램에 참 여가 가능하며 공학교육인증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프로그램에 소속된다.
- 제7조(복학생)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복학생이 전문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공학

교육인증 이수신청서와 이수학점인정신청서를 2학년 2학기 말까지 학과에 제출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며 공학교육인증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프로그램에 소속된다.

제8조(전과생) 전과생은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거쳐 공학교육인증 이수신청서와 이수학점인정신 청서를 전과 후 6개월 이내에 학과에 제출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프로그램에 참여 가 가능하며 공학교육인증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프로그램에 소 속된다.

제9조(내규 변경) 본 프로그램의 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공학교육인증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위원회

제10조(프로그램위원회)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램에는 공학교육인증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위원회를 둔다.

제11조(산학자문위원회)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램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전문 프로그램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산학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2조(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별 운영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전문프로그램 이수요건

제13조(일반사항) 전문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에서 정한 기본교양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프로그램에서 정한 전문교양 교과목인 공학소양 교과목을 총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7.><개정 2018.02.13.><개정 2019.10.01.>
- 2. 전문프로그램에서 정한 수학, 기초과학 교과목(BSM)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수학은 이산수학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초과학 교과목 중 최소 한 분야는 실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전공주제교과목을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4. 공학설계입문, 캡스톤설계를 포함한 설계학점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5. 전문프로그램에서 정한 인증필수 교과목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전 수강학기에서 인증필수 교과목이 삭제,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필수에서 제외될 시에는 이 지정되는 경우 을 이수하여야 한다.

- 6. 전문프로그램에서 정한 졸업과제를 제출하고 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 7. 전문프로그램에서 정한 이수체계를 준수해야 한다. 단,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담당교수의 선수지식 평가를 통해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이수체계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14조(이수인정) 편입생, 전과생 및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복학생의 경우 동일명의 교과 목 혹은 유사교과목에 관한 공학교육인증 이수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프로그램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은 운영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학생지도

- 제15조(지도교수) 지도교수 배정은 학과장이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결정한 방법대로 행하며, 지도교수 배정 시기는 재학생의 경우 학기 시작 직후,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 직후로 하며, 지도교수는 졸업 때까지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16조(내용) 지도교수는 지도학생들의 일반신상, 수강신청 및 학점관리, 진로 및 취업활동, 장학, 졸업작품/논문 등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 제17조(방법) 지도교수는 매 학기 개강 직전 1회 이상의 수강지도를 하도록 하며,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지도 학생을 면담하고 상담일지를 전산상에서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 5 장 편입생

- 제18조(일반사항) 편입생의 선발 및 학점인정에 관한 일반 사항은 학칙 제3장 제18조와 편입학규정 제4조, 제6조에 규정된 편입학생 선발 및 학점인정 심사처리 지침을 따른다.
- 제19조(전문프로그램 참여) 편입생 중에 전문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은 공학교육인증 이수신 청서와 이수학점인정신청서를 편입학 후 6개월 이내에 학과에 제출하여 학과에서 운영 중인 전문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제20조(이수학점 인정)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편입생의 이수학점 인정여부는 컴퓨터소 프트웨어공학과에서 정한 이수학점 인정기준에 의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학과의 교과과정과 동일명의 교과목 또는 유사교과목을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전적대학의 저학년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 학과 고학년의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1조(수용노력) 편입생들의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학과에서는 계절학기 와 특별과정을 통하여 강좌를 개설하는 등 동등한 학습성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6 장 복학생

- 제22조(전문프로그램 참여)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복학생 중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2학기 말까지 공학교육인증 이수신청서와 이수학점인정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함으로써 전문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제23조(이수학점 인정)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복학생이 이전에 이수한 학점의 인정여부는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 정한 이수학점 인정기준에 의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휴학 전에 이수한 교과목 중 복학시점의 교과과정과 동일명의 교과목 또는을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4조(수용노력) 복학생들의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학과에서는 계절학기 와 특별과정을 통하여 강좌를 개설하는 등 동등한 학습성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7 장 전과생

- 제25조(일반사항) 전과생의 선발 및 학점인정에 관한 일반 사항은 학칙 제4장 제21조와 전과 (전공)규정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전과(전공)규정을 따른다.
- 제26조(전문프로그램 참여) 전과생 중에 전문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은 공학교육인증 이수신 청서와 이수학점인정신청서를 전과 후 6개월 이내에 학과에 제출하여 학과에서 운영 중인 전문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제27조(이수학점 인정)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전과생의 이수학점 인정여부는 컴퓨터소 프트웨어공학과에서 정한 이수학점 인정기준에 의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전적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학과의 교과과정과 동일명의 교과목 또는 유사교과목을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8조(수용노력) 전과생들의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학과에서는 계절학기 와 특별과정을 통하여 강좌를 개설하는 등 동등한 학습성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장 교육목표, 학습성과, 교과과정의 평가 및 개선

제29조 (교육목표 개선) 프로그램위원회는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교수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교육목표 개선을 주관한다. 교육목표 개선에 대한 규정은 **운영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0조(학습성과 평가 및 개선) 프로그램위원회는 매년 전문프로그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습성과 성취도를 평가한다. 이 평가결과의 분석을 바탕으로 학습성과 평가체계를 비롯한 제반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한다. 학습성과의 평가 및 개선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교과과정 평가 및 개선)

- 1. 프로그램 교과과정의 모든 교과목은 매 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가 CQI 보고서를 작성한다. 담당교수는 CQI 보고서를 포함하는 해당 교과목의 교과목포트폴리오로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한다.
- 2. 프로그램위원회는 교과목 CQI보고서, 교과목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매 학기 수집된 자료를 1년 단위로 평가한다. 프로그램위원회는 교과목 전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목 전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한다.

- 1. 이 내규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변경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변경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변경 내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변경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변경 내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변경 내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변경 내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변경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변경 내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변경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이 변경 내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프로그램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의 교육품질을 향상시키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사항
- 2.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 3.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프로그램의 학습성과 설정에 관한 사항
- 5.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6.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개편에 관한 사항
- 7. 프로그램의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학생, 교수, 교육시설 및 재원, 교육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8. 프로그램 자체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9.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학과장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간사를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회의) 회의는 학기 말에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프로그램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1. 이 내규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변경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학자문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전문 프로그램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며,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학습성과 및 교과과정의 적절성을 자문하며, 산학교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가 산업체 요구에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2.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을 통해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가 적절하게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3. 종합설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설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회의 위원은 프로그램 교수 2인 이상과 산업체 인사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과 위원은 프로그램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위원장이 임명한다.
- 3. 산업체 위원은 교수들의 추천으로 프로그램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회의) 위원회는 1회/년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프로그램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1. 이 내규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변경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변경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수학점 인정심사 운영세칙

제1조 (이수학점 인정심사서) 편입생, 전과생 및 2005학년도 이전 입학한 복학생을 대상으로 기 취득한 교과목을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이수로 인정하는 절차를 위한 기본 서류이다.

제2조 (이수학점 인정교과목) 편입생, 전과생 및 2005학년도 이전 입학한 복학생을 대상으로 기 취득한 교과목을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이수로 인정하는 대체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은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작성요령)

- 1. 학생은 자신의 성적증명서를 면밀히 확인한 다음 운영 중인 교과과정과 비교하여 자신이 기 수강한 교과목을 이수학점 인정심사서에 본인 스스로 기입한다.
- 2. 동일명의 교과목은 해당위치에 기입한다.
- 3. 동일명의 교과목이 아닌 경우는 해당 교과목의 강의 내용을 확인하여 대체교과목 및 유사 교과목을 기입한다. <개정 2017.09.07.>
- 4. 작성한 심사서는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이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인정심사 절차)

- 1. 동일명의 교과목의 이수는 전문프로그램 교과과정에 준하여 인정한다. 단, 편입생과 전과생의 경우 전적대학 또는 학과의 저학년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 학과에서 고학년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동일명의 교과목이 아닌 경우, 대체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은 프로그램위원회의 확인 및 심사를 통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입생 및 전과생의 경우 전적대학 또는 학과의 저학년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 학과에서 고학년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 3.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성적표를 검토한 후 대체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의 존재여부를 재확인하고, 학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한다.

- 1. 이 내규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변경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변경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변경 내규는 201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목표 개선에 관한 운영세칙

- 제1조(정의)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졸업 후 수년 내에 달성해 야하는 능력과 자질을 말한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의 개설 취지와 동의대학교의 건학이념, 교시,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와 ICT공과대학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한다.
- 제2조(자료의 수집 및 분석) 프로그램위원회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의 성취도 달성 평가와 교육목표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 1. 고용주(또는 상사) 설문조사
 - 2. 졸업생 설문조사
 - 3. 졸업생 진로조사
 - 4. 산학자문위원회의 자문 내용
 - 5. 사회 환경 변화

프로그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초점그룹(focused group) 면담을 추가할 수 있다.

- 제3조(적절성 검토 및 주기) 프로그램위원회는 제 2조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교육목표 수정으로부터 6년이 경과하기 전에 최소 한번 이상의 교육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한다.
- 제4조(개정 시기) 프로그램위원회는 적절성 검토의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를 개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2월말까지 대학 및 소속 단과대학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개정할 수 있다.

제5조(공개)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개정될 때에는 개정된 교육목표를 다양한 방법(공학교육인증지원 시스템, 학과 홈페이지 등 포함)으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즉시 공개한다.

제6조(세부 내용 및 절차)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는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 1. 이 운영세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운영세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습성과 평가 및 개선 운영세칙

- 제1조(정의)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과로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에서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하는 일종의 교육목표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학습성과는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컴퓨터·정보기술 분야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정한다.
- 제2조(자료 수집) 프로그램위원회는 매년 전문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에 정한 모든 학습성과에 대한 성취도를 측정한다.
- 제3조(평가대상, 평가시기)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함에 있어 평가대상, 평가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학습성과 성취도 측정은 전문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모든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 2. 학습성과 성취도 측정은 평가대상인 학생이 졸업하기 3개월 전에 시행한다.
- 제4조(평가체계) 본 프로그램의 학습성과 성취도 측정을 위한 평가체계(수행준거, 실행수준, 평가도구, 측정방법, 채점기준, 달성목표 등 포함)는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분석 및 개선)

- 1. 매년 수집된 학습성과 성취도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학습성과의 달성 여부와 부족사항에 대하여 분석한다.
- 2. 매년 학습성과 성취도의 평가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여건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다음해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 3. 프로그램의 학습성과는 매년 측정한 성취도를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3년을 주기로 하여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한다. 단,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변경되는 등 특별한 경우 프로그램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공개)

프로그램의 학습성과 평가체계(수행준거, 달성 목표, 평가도구, 평가기준 등을 포함)는 다양한 방법(공학교육인증지원시스템, 학과 홈페이지 등 포함)으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개한다.

제7조(세부 내용 및 절차)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는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 1. 이 운영세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운영세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졸업과제(작품) 인정심사 운영세칙

제1조. 본 학과의 졸업을 위해서 졸업 요구 학점의 이수뿐만 아니라 별도의 졸업과제(작품)을 제출하여 평가받아야 한다.

제2조. 졸업과제(작품)의 응시 자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졸업과제(작품)로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졸업 이전 학기 중(늦어도 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에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한다.
- 2. 졸업과제(작품) 지도교수 결정 : 과제 작성 신청 후 학과에서 결정 통보한다.
- 3. 지도교수가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와 협의한 후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작품)의 성격상 지도교수가 인정하면 3명까지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 4. 과제(작품) 제출시기 : 매년 5월초 또는 11월초까지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과제(작품) 발표시기 :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에 프로그램 교수와 학부 학생들의 참석 하에 약 20분 정도 발표를 한다.
- 6. 과제(작품) 심사위원은 프로그램위원회에서 3명으로 선정하며, 심사 결과, 심사위원 전체 평균 7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 7. 과제(작품)에서 불합격한 자는 해당 학기의 졸업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1. 이 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변경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